교정학

- 문 1. 내란죄(「형법」 제88조)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란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?
 - ① 보호감호처분
 - ② 치료감호처분
 - ③ 보안관찰처분
 - ④ 보안감호처분
- 문 2. 현행법상 수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 - 그.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 어학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 - 나.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 처우급, 완화경비처우급,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.
 - 다.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프로그램도 포함한다.
 - 리.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
 - 고.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.
 - ① 7, 4, 5
 - ② 7. 5. 2
 - ③ ∟, ⊏, ⊒
 - ④ 나, ㄹ, ㅁ
- 문 3.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파례에 의함)
 - ① 「형법」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.
 - ② 「소년법」상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
 - ③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시에 명할 수 없다.
 - ④ 「형법」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.
- 문 4.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비사법적 구제의 일환으로 수용자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,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② 수용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·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.
 - ③ 수용자는 소장의 위법,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상의 청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.

- 문 5.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달리 취급받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.
 - ②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완화 경비시설에 준한다.
 - ③ 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.
 - ④ 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허용할 수 있지만 미결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문 6.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甲의 행위 중 법령에 적합한 것은?
 - ① 교도관 甲은 도주 및 손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A의 거실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였다.
 - ② 교도소장 甲은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B를 14일간 보호실에 수용하였지만,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4일간 기간연장을 하였다.
 - ③ 교도소장 甲은 교정시설의 물품검색기를 손괴하고,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한 수용자 C에 대하여 즉시 48시간 동안 진정실에 수용하였다.
 - ④ 교도관 甲은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려는 수용자 D를 발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자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고 보호복을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다.
- 문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?
 - 그.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
 - 나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
 - 다.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
 - 고.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있는 수용자
 - ㅁ.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
 - ① 7. 🗆
 - ② L, 己
 - ③ ∟. □
 - ④ □. =
- 문 8.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④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휴는 형집행 정지의 일종이다.

- 문 9.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.
 - ②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십이법이 존재하였다.
 - ③ 조선시대 도형(徒刑)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, 장형(杖刑)이 병과되었다.
 - ④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전통적인 5형(태형, 장형, 도형, 유형, 사형) 중심의 형벌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.
- 문 10. 「소년법」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「형법」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?
 - ① 보호자 또는 시설에 위탁
 -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
 - ③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
 - ④ 소년원에 단기위탁
- 문 11. 범죄 및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하며,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.
 - ②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.
 - ③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은 개인의 소질보다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.
 - ④ 갈등이론에 의하면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,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한다.
- 문 12. 수형자의 '재사회화'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범죄원인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.
 - ② 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.
 - ③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.
 - ④ 범죄자가 사회규범에 적응하도록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.

- 문 13. 「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지만,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금할 수 있다.
 - ②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 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 - ④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하지만, 남자의사는 여자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- 문 14.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판결전 조사의 대상자를 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.
 - ② 사실심리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는 소송절차이분(訴訟節次 二分)을 전제로 하며, 미국에서 보호관찰(Probation)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.
 - ③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, 미국은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고서에 대하여 논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.
 - ④ 형사정책적으로 양형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에도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.
- 문 15.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와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 - ② 계호 교도관이 검찰 조사실에서의 계구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.
 - ③ 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,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교정의 필요상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.
 - ④ 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.

문 16. 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.
- 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교정시설의 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- ④ 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한다.

문 17. 다음 교도작업의 특징을 유형별로 바르게 묶은 것은?

- ㄱ.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.
- ㄴ. 취업비가 필요 없고 자본이 없이도 가능하다.
- 正. 판매와 관계없이 납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처리에문제가 없다.
- 리. 작업의 대형성으로 높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.
- ㅁ.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.
- ㅂ.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- 스. 관계법규의 제약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계, 기구, 원자재 구입이 곤란하다.
- 0.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작업이 가능하다.
- 지.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.
- ㅊ. 다수의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어 미취업자를 해소할수 있고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.
- ① 직영작업 ㄱ, ㄹ, ㅇ
- ② 노무작업 ㄴ, ㅂ, ㅈ
- ③ 위탁작업 ㄷ, ㅁ, ㅊ
- ④ 도급작업 ㄹ, ㅅ, ㅈ

문 18.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검사는 납부능력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회봉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.
- ③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상응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하되, 산정된 사회봉사기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집행한다.

문 19.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.
- ②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다.
- ③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 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.
- ④ 장기 6년,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.

문 20.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노인·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,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한다.
- ② 교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- ④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